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9월 0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혁수 도시과장)

가. 제안이유

평창군 일원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평창군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는 시·군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라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위법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지광천 의원	• 등록기준 대수를 15대 이상 50 미만으로 규정하였는데 15대 규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권혁수 도시과장	•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20대로 규정하고 있고 너무 작아지면 사업자 등록이 남발될 수 있어 15대 결정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평창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평창군에 소재하고,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